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37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한지아·고동진·정성국

진종오 • 백종헌 • 서일준

임이자 · 정연욱 · 김재섭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 그러나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도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병원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출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집중치료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
	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병원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이하 "집중치료병원"이라 한
	다)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u>있다.</u>
	<u>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u>
	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일
	<u>것</u>
	2.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인
	력·시설 등을 갖출 <u>것</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집중치료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 게 된 경우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 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